

의안 번호	1555	[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5. 30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5. 30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6. 14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·운영하고,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, 실무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~제7조)
- 업무연락관 파견, 현장대응반장, 현장책임관 지정 등 (안 제8조~제11조)
- 재난현장 자원 동원 및 출동지원 요청, 재난현장 상황 공유, 긴급구조 및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~제16조)
- 재난현장 통제,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7조~제21조)
- 통합지원본부 철수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(안 제22조~제23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과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로서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음.
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-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